

「 전 기 통 신 사 업 법 」 시 행 령

일 부 개 정 안

방송통신위원회

법 제 처 심 사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받은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단체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하려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여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의 신고, 삭제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용역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국

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이버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1인 또는 복수의 사람이 출연하여 제작한 음성, 영상, 음성 및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서비스

다.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정보를 검색하였을 때 그와 관련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또는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② 법 제22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경우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정보의 제목·명칭 등의 비교를 통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된 불법촬영물등의 정보임을 식별하여 이용자의 검색결과를 제한하거나 검색결과로 송출되지 않도록 삭제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3. 정보의 특징 비교를 통해 해당 정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임을 식별하여 이용자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4. 불법촬영물등을 게재·공유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있어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단체가 시행하는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법 제22조의5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조치의무사업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불법촬영물등 유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제1항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3의2와 같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치의무사업자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⑥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부터 제4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별표 2 제2호아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위반행위 아목부터 위반행위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 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3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
자. 법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4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6개월
차. 법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5		등록취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3개월
-----------------	--	--	---------------------------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조치의무사업자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

- 1) 기준금액은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 2) 제30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보통 위반행위	5억원

-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인한 피해규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 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 감경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제2호 가목에 위반행위 3)부터 4)까지를 각각 위반행위 6)부터 7)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위반행위 3)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의 2호			매출액의 1/100
4) 법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의 3호			매출액의 1/100
5) 법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의 5호			매출액의 1/100

별표 9 제2호 나목에 위반행위 4)부터 5)까지를 각각 위반행위 7)부터 8)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위반행위 4)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	법 제27조제1항제3의 2호			1억원
---------------------------------	-----------------	--	--	-----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5)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의3호			1억원
6)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의5호			1억원

별표 11 제2호에 위반행위 다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부터 자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4조제1항제1호	1,500	3,000	5,000
라.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용·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1호	700	1,400	2,000
바.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법 제104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사.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4조제1항제3호	1,500	3,000	5,000
아. 법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2	700	1,400	2,000
자.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2	350	700	1,0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요청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성명(기관·단체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생년월일 (기관·법인번호)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현황*	불법촬영물등의 유통현황*	
	 불법촬영물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URL과 화면 캡처본을 첨부하여 주시되, URL 기재가 어려운 경우 검색어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청 사유*	☐ 불법촬영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
	☐ 허위영상물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등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등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편집·합성 당시에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 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를 표현한 촬영물/영상물 *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 기타	 그 외 촬영물/영상물이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명백히 해당함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요청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명)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3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신고인(대표자) 성 명
(기관 ·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0조의5(불법촬영물등의 신고 ·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 5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u> <u>1.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u> <u>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u> <u>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받은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단체</u> <u>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하려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여</u>

<신 설>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의 신고, 삭제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

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용역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이버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1인 또는 복수의 사람이 출연하여 제작한 음성, 영상, 음성 및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서비스

다.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정보를 검색하였을 때 그와 관련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또는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② 법 제22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경우 조치의 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정보의 제목·명칭 등의 비교를 통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된 불법촬영물등의 정보임을 식별하여 이용자의 검색 결과를 제한하거나 검색결과로 송출되지 않도록 삭제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3. 정보의 특징 비교를 통해 해당 정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임을 식별하여 이용자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4. 불법촬영물등을 게재·공유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제3
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있어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 또는 방
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 단체가 시행하는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유
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법 제22조의5제4항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을 말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의
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조치의무사업자, 관계기
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적·관리적

<신 설>

조치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
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불법촬영물등 유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
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
의6제1항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치의
무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
정절차는 별표 3의2와 같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의 총액은 법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
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치의무사업자 제공 서비스
의 특수성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⑥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납부 및 독촉에 관하
여는 제48조부터 제49조의2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위원회”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연 락 처	(02) 2110 - 1549